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2
----------	-----

2023년 9월 1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최민규 의원 등 57명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민규 의원)

1. 제안이유

-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만 8천 건에서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경험률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저연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어릴 적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대학생 절반 이상(54%)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보다 2.6배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음.
- 이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등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임.

- 따라서 교육감이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실시 등의 신고제도 근거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지원(안 제8조제3호)
- 나.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안 제8조제5호 신설)
- 다. 피해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안 제8조제6호 신설)
- 라. 피해신고 독려를 위해 교육감의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의 실시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III.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최민규 의원 등 57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22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 해소를 위한 가정학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학교폭력은 최근 다양한 유형(언어·사이버·성폭력)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은 자살 시도, 대학 진학 포기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별다른 제한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 공분이 증대되고 있습니다.¹⁾
-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지난 4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이

1) "학교폭력에 수차례 자살시도" 국민청원...충북교육청 직접 조사, 연합뉴스, 2021.5.3., 학폭 피해·가해자 같은 고교 진학...법 사각지대에 피해자 분통, KBS 뉴스, 2022.2.22.,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무기 된 소송전...그들의 구제법?, SBS NEWS, 2023.2.27.

른바 ‘정순신 방지법’ 을 처리하는 등²⁾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 법률자문 및 학습결손 등을 지원하고자 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표-1] 서울시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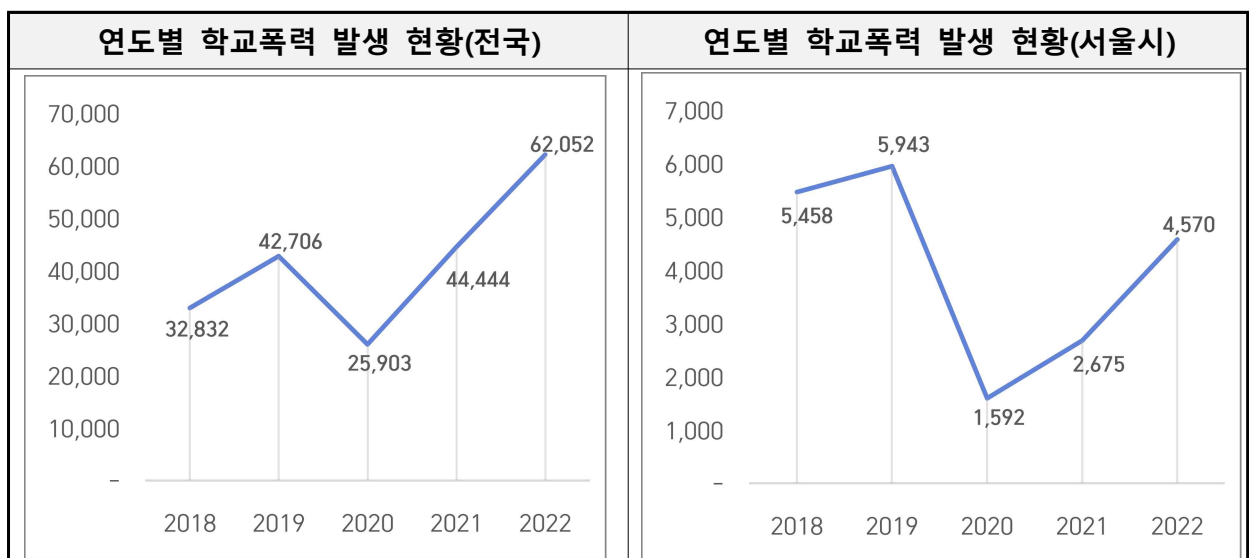
(단위: 건)

연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	계
2018	2,826	956	116	101	197	698	564	-	5,458
2019	2,443	1,409	306	191	251	622	488	233	5,943
2020	549	292	124	36	49	156	350	36	1,592
2021	868	697	127	75	93	304	432	79	2,675
2022	1,750	1,229	163	90	131	568	488	151	4,570
계	8,436	4,583	836	493	721	2,348	2,322	499	20,238

*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그림-1] 전국·서울시 연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2018~2022년)

(단위: 건)



* 출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2023.4.12.)

2)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교폭력에 사이버 폭력 포함, 매일경제, 2023.6.12.

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1) 피해학생 보호 지원(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먼저 안 제8조제3호는 교육감의 피해 학생 보호 지원 사항에 학생·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행 조례상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로까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등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³⁾
-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피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⑧ (생략)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⑫ (생략)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생략)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생략)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5. (생략)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⑧ (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피해학생의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
3.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 학생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유형별 치유·보호 기관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⁴⁾

- 이와 같이 관련 법률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조치 계획이나 제도에 비추어볼 때 학생 및 학부모의 동반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같은 조 제3호와 같이 현행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학생·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개정할 경우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가 더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대상을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학부모까지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 그리고 ‘동반’이라는 표현이 피해학생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상담 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8833, 2023. 6. 8.)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피해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정신건강 자문의를 위촉하여 피해학생·학부모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심리·의료 지원 확대하기로 하였는바,

4)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교육부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정부부처의 정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료되는 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트라우마 등 그 피해는 학생 당사자를 넘어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를 통해 그 치유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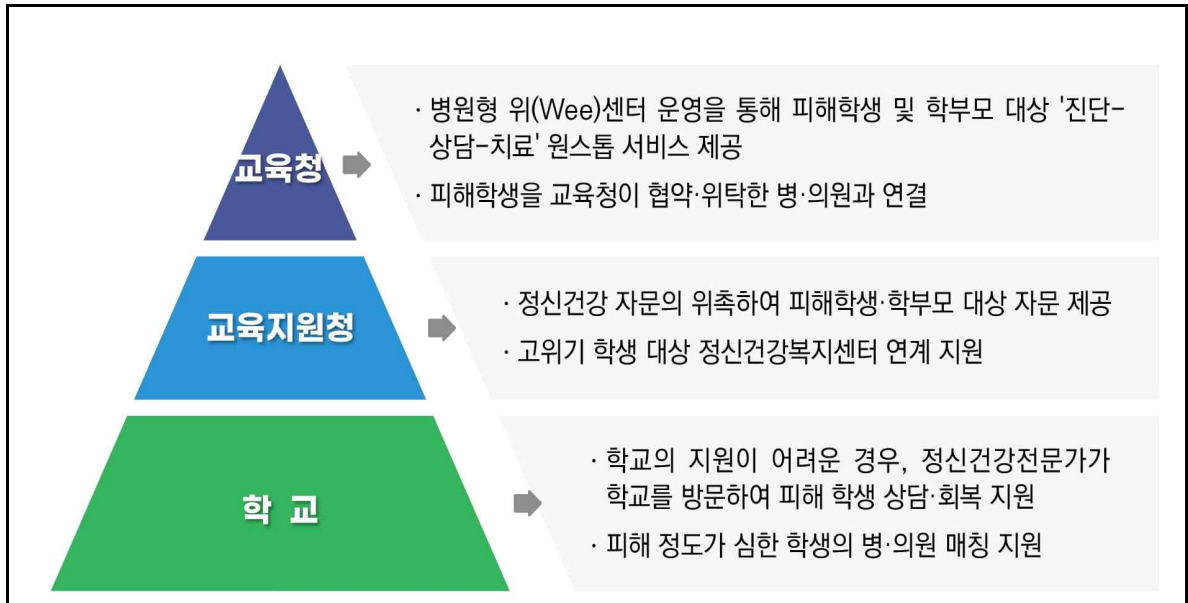
○ 교육청의 상위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8조제3호의 규정과 같이 치유대상을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법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동반’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안하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상담·정신과 진료의 지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⁵⁾

5) “학폭 피해학생 정신건강 살펴야...학부모 양육상담도 필요”, 연합뉴스, 2023.3.14.

[그림-2]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의료지원(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의 역할)



*출처: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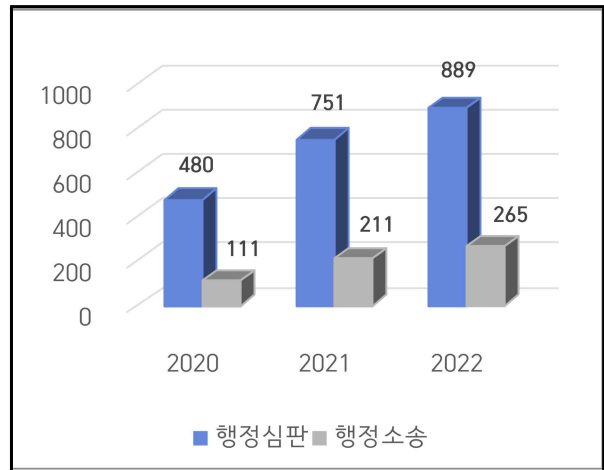
- 한편 안 제8조제5호는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지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가해 학생 불복 사례가 2020년 대비 2022년에 각각 1.8배, 2.38배 증가하였는바 이는 현재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을 방증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법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지원을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표-2]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⁶⁾ 제기 현황(2020~2022년)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행정심판	480건	751건	889건
행정소송	111건	211건	265건



*출처: 교육부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8조제5호 중 변호사 선임을 규정한 것이 변호사 배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배정을 위한 선임비용 지원과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인지, 사안처리⁷⁾ 단계 중 어느 단계의 지원인지에 대해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피해 추정 단계 혹은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진행 단계 시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교육청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조장하게 되어 학교폭력예방방법의 교육적인 선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모든 피해학생이 변호사 선임을 요

6)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7)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대응→사안조사→전담기구 심의→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교육장 조치결정)→조치이행

청할 경우 예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전문변호사 지원 및 법률구조서비스를 매칭·제공하기로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법률지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학폭 예방에 관한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개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⁸⁾ 교육감이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조력인을 지정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과 예산 문제에 대한 교육청 개입 단계의 명확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⁹⁾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방향안에서 필요한 예산은 편성범위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학생이 필요

8)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 2023.6.12.,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JTBC, 2023.6.12.

9) 학폭위원이 가해 학생 변호사로…학폭 피해자 "우린 누구를 믿나요", 뉴스1, 2023.3.15.

로 하는 법률지원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엇보다 안 제8조 본문에서 피해학생 보호 지원 범위에 대한 재량권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교육부·법무부·권익위)

- **신규**(법률지원 확대) 교육청이 지역 로펌 연계, 전문변호사 지원, 법률구조서비스 매칭·제공을 통해 피해학생의 법적 대응 지원
 ※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저소득층 피해학생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 **신규**(국선대리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에게만 선임·지원하므로 피해학생이 심판참가시에는 선임 불가 → 심판참가시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권익위)
- **신규**(마을변호사) 일반 주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확대·운영
 - 법무부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마을변호사’ 구성, 교육부는 마을변호사 명단을 교육청에 공유, 교육청은 피해학생과 매칭

*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p.13

-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 제8조제6호는 교육감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분리 조치 기간(7일 이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3주) 및 심의위원회 심의(4주)를 감안한다면 최소 7주 10)이상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0)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교육부, 5~9p. 2023.4.12.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피해 학생의 결석 등에 따른 학습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학습을 지원하도록 한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2) 안 제8조의2(피해신고 등)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의2제3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의 수사 신고접수와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부의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의 교내 신고 방법은 구두·신고함·설문조사 등으로 구분하고, 교외 신고 방법은 112 경찰청·117 학교폭력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를 기초로 볼 때 안 제8조의2제3항은 상위법의 규정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신고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표-4] 교육부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App) 주요 내용(안)

- ◆ (조기감지)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수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의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
 - ◆ (학생상담) 주제별 상담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문제유형별 맞춤형 통합 상담 지원
 - ◆ (즉시신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피해를 즉시 신고 (익명신고 기능 포함)하고 통합 지원
- ※ 지원연계 : 117(학교폭력), 1366(성폭력), 112(아동학대), 1670-2876(선수폭력),

1661-5004(자살), 1388(청소년전화)

◆ (긴급도움) 학생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교사, SPO(School Police Officer)등에 긴급도움 요청

* 출처: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22.9.6.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긴급전화 및 신고함 설치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행정관리담당-8833, 2023. 6. 8.).
- 그러나 안 제8조의2제3항은 학교폭력의 신고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인바, 이는 이미 교육부의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11)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신고방법)

교내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두<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을 위치를 정한다.● 설문조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되,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메일<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홈페이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외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2경찰청

11)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18~20.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동반”을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
6. 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제3항 중 “위한 캠페인 등의”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학생·학부모 <u>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u></p> <p>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5. (생략)</p> <p>제8조의2(피해신고 등) ①·② (생략)</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u>캠페인 등의 홍보 방안</u>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u> ----- ---</p> <p>4. (현행과 같음)</p> <p>5. <u>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u></p> <p>6. <u>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8조의2(피해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u> ----.</p>